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쟁점



윤동열 교수  
건국대학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검토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9월 28일 (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함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①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②사업주의 예방가능성, ③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함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규정

①연면적 2천m<sup>2</sup> 이상 지하도상가, ②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③바닥면적 1천m<sup>2</sup> 이상 영업장, ④바닥면적 2천m<sup>2</sup>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 ①실내공기질법상 시설, ②시설물안전법상 시설, ③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 ④그 밖의 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검토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9월 28일 (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 이하 '②원료·제조물', '③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
-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반기 1회 이상)
- ④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 ⑨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검토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9월 28일 (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 처리절차 마련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연 1회 이상)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검토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9월 28일 (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 처리절차 마련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연 1회 이상)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검토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9월 28일 (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함

## 안전보건교육 수강 등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 정비
-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 (교육방법) △20시간 범위내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
- (과태료)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

-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 (공표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 (공표 방법)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직업성 질병(별표1)

### ① '열사병' 발생 원인 및 질병특성 구체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제4조)

### ① 해석상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문구 통일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의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규정

### ② 업무처리절차 마련 후 해당절차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반기 1회)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수정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제4조)

- ③ **적정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축소 해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는 등 수정**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아래 ①, ②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②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제4조)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방안 구체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상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⑤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규제완화법 등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배제되지 않도록 문구 수정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안전보건교육(제6조, 별표4)

- ①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주요교육 내용 수정, 교육대상자 통보 내용 및 절차, 이수확인서의 발급 등 절차 정비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안전보건교육(제6조, 별표4)

### ② 과태료 일반기준에 맞춰 감경가능 사유 추가, 감경기준 정비 등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 • 개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그 밖의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 개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시행일 : '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4.1.27.)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 중대산업재해란?

###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②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 · 법인 ·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절차**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주요내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쟁점

- 처벌 수위 상승 불구 예시·대상 등 규정 모호하여 보완입법 필요성 강조

## 경영계 요구사항

### [전반적인 요구사항]

- 중대재해의 정의, 의무 주체의 범위, 준수 의무의 내용 등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
-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 제시
-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 경영자의 처벌수위는 높아진 반면 책임 범위 모호
- 현실적으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검토

## 경영계 요구사항

### [유예기간 부여 및 면책권 부여]

-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최소 1년 이상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검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쟁점

-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불분명한 경영 책임자 개념 및 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 건의

## 경영계 요구사항

### [모호한 규정 및 법 개선]

-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함
- 시행령의 안전보건예산 조항에서 ‘필요한’ ‘충실하게’ 등 현장에서 적용하기 불명확한 표현 시정
-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
- 의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재개정을 추진 필요

## 경영계 요구사항

### [대표이사 처벌 관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범위 미명시
- 본사 대표이사 처벌을 두고 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경영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다른 책임자가 있으면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벌의 남용 가능성 높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쟁점

- 처벌 수위 상승 불구 예시·대상 등 규정 모호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보완입법 필요

## 경영계 요구사항

### [유예기간 부여 및 면책권 부여]

-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듦
-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 (최소 1년 이상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 필요)

## 경영계 요구사항

-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며,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었다면 면책 가능토록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쟁점

- 직업성 질병 범위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과로사 및 심혈관계 질환이 제외되었으며, 2인 1조 근무 명시가 되지 않는 등 실효성 부족 비판

## 노동계 요구사항

### [직업성 질병 포함]

-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으나, 노동계가 요구한 과로나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제외됨(인과관계가 명확한 '급성' 질환 아님)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뇌·심혈관 질환(과로)이나 직업성암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못함

## 노동계 요구사항

### [법령 점검의 민간 위탁 금지 등]

- 법령 점검의 민간 위탁 금지, 2인1조 근무 명시화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
-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
- 공중이용시설에 건설현장 적용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쟁점

- 정기점검 관련하여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중교육 도입 요구 반영 필요성 강조

## 노동계 요구사항

### [정기점검 관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 대폭 축소
- 안전보건관리 조직·예산, 위험요인 확인, 도급·용역·위탁 등의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도 분기별 1회로 확대 필요

## 노동계 요구사항

### [가중교육 도입]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또는 법인 경영책임에 대한 교육도 기존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향후 안전보건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교육 필요
-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중교육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음

**END OF DOCUMENT**